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미자 의원 발의】



2021.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7호로 2021년 10월 8일 이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설 (안 제5조)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 추가 (안 제17조)

다. 준용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4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1. 10. 6. ~ 10. 1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정시설 보수
- 안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을 신설하고,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